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3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3월 2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한시기구 정비를 통해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,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별 신설사무를 규정함으로써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(1년)

- 지역발전본부(~'19.6.30.) : 4대 권역별 개발사업 총괄
- 문화시설추진단(~'19.8.18.) : 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 전담

나. 법령개정에 따른 신규사무 소관기관 지정

-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업무를 안전총괄본부에 부여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 강화 규제 없음
- 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 설치): 해당없음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 등): 원안동의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평가제외
- (6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18. 3. 8. ~ 3. 12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8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하고,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21조제1항의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의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9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안전총괄본부) 안전총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~7. (생 략) <u>〈신 설〉</u> 8. (생 략)	제15조(안전총괄본부) ----- ----- 1.~7. (현행과 같음) <u>8.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</u> <u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u>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과 일부 실·본부·국에 대한 신규업무 부여 등 기구조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(☎ 2133-6724)